



山林經營基盤構築에 盡力

林 種 潤 / 營林局長

營林局의 所管業務는 山地利用, 木材需給, 林道施設, 自然休養林造成運營, 國有林의 經營, 國有財產管理등으로서 今年度는 既往의 長期 計劃에 依한 常例的인 事業은 더욱 內實있게 改善發展시키고 法令改正이나 制度改善에 따른 新しい 施策은 이를 定着시키는데 力點을 두고 積極 推進해 나갈것이다.

1. 山地의 利用管理體係定立

○山地利用區分의 再編

山林은 木材生產과 더불어 여러가지 公益機能을 提供하는 公共財的 性格이 크기 때문에 私有財產이라하더라도 立地與件에 따라서는 이의 利用을 規制할 必要성이 있으며 또한 林地는 한번 나무를 심거나 다른用途로 利用되면 다시 還元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될때는 經濟的, 時間的 낭비등 不作用이 많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施行錯誤가 없이 처음부터 合理的인 利用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全國山林을, 繼續 山林으로 存置 管理하여야 할 “保全林地”와 다른 用途로도 開發利用할수 있는 “準保全林地”로 區分하고 原則的으로 準保全林地에 限해서 開發

할 수 있도록 하는 山地利用制度를 運營해 오고있다.

그러나 現在의 利用區分基準은 그 山地의 立地의in 利用側面보다는 傾斜度, 立木度를 基準하여 定하여졌기 때문에 山地利用에 強은 制約를 받고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앞으로 山地利用區分基準을, 木材生產을 主目的으로 하는 “生産林地”保健休養, 災害防止등에 必要한 “公益林地” 山林經營外 다른 用途로도 쓸수있는 “產業用地”로 區分하여 山地를 보다 效率性있게 利用할 수 있도록 法令改正등 改編作業을 推進할 것이다.

○山林經營計劃作成運營

營林計劃은 山林經營의 基本으로서 合理的인 編成과 正確한 運用이 되어야 하나요 즈음, 山林事業은 收益性이 낮은데다 農山村의 勞動力不足 및 勞賃上昇등 施業與件의 制約으로 事業推進에 어려움이 많다고 生覺된다.

그러나 山林의 育成管理는 山主의 財產의 收益增進面이나 國家의 國土保全, 景觀造成, 木材의 安定的供給 등 公益的側面에서 볼때 最善의 山林施業을 해나가야 할것이므로 立地의 與件에 따라 山主의 所得을 올

올해 목표

- 총목재수급량 : 11,303천m³
 - 외재수입량 : 9,681천m³
(86%)
- 임도시설 : 1,100km
- 자연휴양림 조성 : 14개소
- 민유림 매수 : 13,000ha

될수 있는 施業種을 開發하고 政府의 支援도 보다 擴大하여 營林計劃의 作成運用이 活性化되어 나가야 할것이다.

今年度는 總 813千ha에 대한 營林計劃作成과 來年度作成을 為한 204千ha의 國有林에 대한 山林調查를 內實하게 推進할 것이다.

한편, 國有林의 效率的인 經營을 為해서 現在 造林, 育林伐採등에 국한된 營林計劃以外에 하나의 經營單位인 管理所管轄山林全體에 대하여 既存營林計劃上의 施業種을 包含하여 休養空間, 林產物加工施設, 山林保護, 林道等 地域與件에 알맞는 모든分野에 대한 綜合的인 經營青寫眞이 되도록하는 國有林經營綜合計劃을樹立 運營할 것이며, 今年에는 우선 山林이 集團化되어 있는 13個管理所에 대하여 實施할 것이다.

○ 林野賣買證明制度運營과 他用途轉用負擔金등 徵收

山林을 投機의 目的으로 買收하여 放置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為하여 林野를 買收할때는 實需要者임을 證明하는 賣買證明書를 發給받도록 山林法을 改正 運用中에 있는바 이制度의 實施目的이 達成되도록 優

底한 施行을 하면서 公正迅速히 處理할 수 있는 運營改善에도 努力할것이다.

한편, 山地를 他用途로 轉用할 때는 종전에는 代替造林費를 保全林地에 限해 賦課徵收하던것을 今後는 改正 山林法令에 따라 準保全林地까지 擴大하고 이 代替造林費를 賦課하는 轉用林地에 대하여는 農漁村構造改善을 為한 負擔金도 賦課徵收처럼에 따라 처음 施行하는 이 制度가 所期의 成果를 거두도록 山地運用管理業務을徹底히 遂行해 나갈것이다.

2. 木材需給計劃 및 林木伐採

木材는 國家產業의 必須原資材이나 國內材가 不足하여 多은 原木을 外材에 依存하고 있어 關聯產業이 원활히 推進되기 為해서는 需要量의 正確한 豫測과 計劃量이 適期에 需給되어야 한다.

今年度 總 木材需給量은 11,303千m³로서 國內材는 14%인 1,622千m³에 不過하여 86%에 해당하는 9,681千m³는 外材를 輸入充當하여야 할 實情이다.

國內材는 今後 木材資源增蓄을 為하여 優良木은 繼續 保存 育成하는 施策下에 各種被害木이나 支障木 및 間伐木為主로 生產하고 營林計劃林地를 對象으로 伐採를하여 鑛山坑木이나 烏普用材, 其他 產業用材로 優先 供給되도록 하며 한편 外材를 適期導入하여 必要한 用材가 원활히 需給되도록 할 것이다.

3. 林道施設事業의 發展的施策構究

林道는 山林經營上 必須施設인 同時に 地域開發에도 必要한 主要基盤施設이므로 이

를 最大限 促進하는 方針下에 2010年까지 總 56千km를 設置하여 1ha當 林道密度를 現在의 美國水準인 10m 程度가 되도록하는 長期目標를 設定 積極 推進中이다.

그러나 이 事業을 推進함에는 山主는 財力이 零細하여 投資ability이 없으므로 거의 政府支援으로 實施하고 있는바 이에 必要한 所要豫算의 確保, 技術人力 裝備의 支援, 推進機構의 未治 등 問題點이 많으므로 效率의in 推進體制가 갖추어지도록 改善해 나갈것이다.

今年에는 1,100余km의 林道를 新設하고 明年에 施工할 豫定地에 대한 設計를 미리 實施할 計劃인바 이 事業이 完璧하게 完了 되도록 努力할 것이다.

4. 自然休養林造成運營

우리 社會가 都市化, 產業化가 되고 國民의 經濟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野外休養需要가 急히 늘고 있어 이를 山林에서 收容할수 있도록하고자 山林廳에서는 自然休養林造成 長期計劃을 樹立 年次的으로 推進해 가고 있다.

既, 一次의으로 全國에 100個所의 休養林을 造成할 目標不에 1988年부터 1991년 까지 4年동안에 26個所를 造成하여 運營中에 있고 今年에도 14個所를 造成할 計劃이다.

그러나 이 事業은 初期段階로서 施設技法의 開發, 充分한 便益施設을 할수 있는豫算의 確保, 運營管理體制의 補完 등 發展시켜야 할 課題가 많으므로 이를 為한 努力を 繼續할 것이다.

5. 國有林의 擴大集團化

木材의 長期安定的 供給基盤造成과 山林의 公益機能增進을 為하여는 國家가 直接經營管理할수 있는 國有林擴大가 必要하므로 이를 為하여 現在 總山林面積의 21%에 不過한 國有林을 2040年경에는 40%水準이 되도록 長期目標를 設定 推進中에 있다.

擴大地域은 既存國有林地帶를 包含하여 今後 山林經營適地로 判斷되는 地域을 國有林擴大圈域으로 設定하고 이 地域內 適地私有林을 積極 買收하면서 한편으로는 保有不適合한 國有財產과 經營適地 私有林과의 交換, 隱匿忘失財產의 索出還收等 方法도 아울러 推進하여 擴大目標가 達成되도록 努力하고 있다.

今年에는 13千余ha를 擴大할 計劃인바 目標量以上 擴大되도록 行政力を 集注할 것이다.

6. 國有財產管理

山林廳所管 國有財產은 130余萬ha의 山林과 田畠, 垈地등 一部 雜種財產을 包含한 많은 財產이 全國에 分布되어 있어 이의 徹底한 管理가 必要한 것이다.

그中 約20萬ha는 造林이나 牧畜, 鑛業, 其他 各種產業施設地로 貸付 또는 使用許可되어 있어 不實地가 없도록 항시 點檢을 하고 特히 大面積貸付地인 造林과 牧畜地에 대하여는 今年中에 一齊調查를 實施하여 不實個所는 貸付取消等 管理를 徹底히 해 나갈것이다.

한편 종전에 各道에서 管理해 오던 不要有國有林 等 國有財產을 昨年에 營林署로 移管케됨에 따라 引繼引受를 正確히 하고 보다 濃密한 管理가 되도록 할 것이다.★